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04. 12. 14
제출자 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산공원내 위치한 사천시 승공관이 용도 폐지와 함께 건물 철거(멸실)됨에 따라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의 폐지.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4. 11. 11 ~ 2004. 12. 10)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사천시승공관관리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第15條（條例）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